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12. 11.

사건번호 2016년형제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정보

직업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거



등록기준지

죄 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제324조 제1항, 구 형법(법률 제12898호) 제324조, 형법 제127조, 제30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16. 11. 21. 구속

변호인

2. 피고인 죄

직업 임대업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제324조 제1항, 제30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2016. 11. 3. 별건 구속)

변호인

II. 공소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김 은 2013. 10. 경부터 2016. 10. 깊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 제2차관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고,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피고인 최 (2016. 11. 20. 구속기소)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장 (2016. 12. 8. 구속기소)는 피고인 최의 이종조카로서, 2015. 7. 경 동계스포츠 영재발굴 및 지도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경재센터(이하 '영재센터'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국회 제출
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 (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이 울려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안 (2016. 11. 20. 구속기소)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 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 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김 은 2013. 12.경 피고인 최 을 소개받은 이후,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민원이나 각종 이권사업 등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국가정책이나 공직 인사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최 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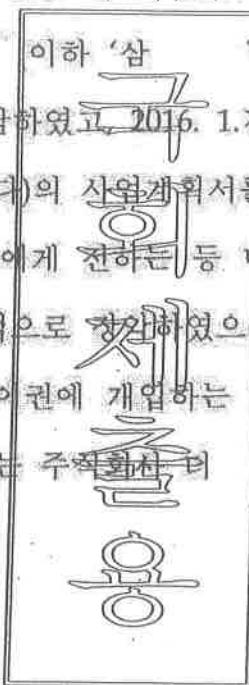
피고인 최 은 피고인 김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이나 공공기간·민간기업 등의 후원금을 집중 지원받아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는 ~~이종조~~ ~~장~~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영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장 는 2015. 2.경 피고인 최 을 통해 피고인 김 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김 으로부터 법인 설립절차 등의 도움을 받아 2015. 7.경 전직 스키선수인 박 을 회장으로, 전직 빙상선수인 이 등을 사진으로 선임하여 영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영재센터가 수령한 각종 지원금 등을 유용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차명 사내이사를 내세워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두 (2015. 7. 설립)과 스포츠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 (2016. 3. 설립)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김 은 문체부 제2차관 재직기간중 두 차례 장관이 경질되었음에도 피고인 최 의 영향력 등을 배경으로 현 정부 장·차관 가운데 최장기인 3년간 차관직을 유지하였고, 2014. 10.경 제1차관 소관업무인 관광 분야 업무를 제2차관 소관으로 이관받는 등 문체부 내 각종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을 전횡하면서, 피고인 최 등이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체육 관련 사업을 원조하였다.

한편, 피고인 최 은 2015. 7.경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단법인의 명칭을 '미 '라고 정하며 직접 면접을 통해 재단에

서 일할 임직원을 선발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지연 등으로 재단 설립이 지체되자 2015. 10. 하순경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인 정 을 통해 '리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등 재단법인 미 (이하 '미'이라 고 한다)의 설립과 주식회사 삼 부터의 재단 출연금 모집에 적극 가담하였고, 2016. 1. 경 설립된 재단법인 케 (이하 '케' '이라고 한다)의 상임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등 미 케 에 대한 인사, 예산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특히 케 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케 (이하 '더' 라 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채 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삼 의 영재센터 후원

(1) 2015. 10. 경 5억 5,000만원 후원

피고인 김 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프로스포츠 진흥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종합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최 은 미, 이나 케 의 기업 출연금 모집과 흡사
하게 문체부 제2차관인 피고인 김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재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5. 7.~8.경 피고인 김 등에게 '영재센터를 후
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봐 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피고인 김 으로부터
'빙상연맹을 맡고 있는 삼 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장 에게 승마 종목과 관련 사업예산서를 전네주며
'승마 종목 사업계획서를 동계스포츠 종목으로 바꿔라, 삼 에 잘 것이니 똑바로
잘 만들어라'라고 말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장 는 피고인 김 등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재센터의 예산을 마
련하고자 하는 피고인 최 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
하여 피고인 최 에게 전네주었다.

피고인 최 은 2015. 8.경 피고인 김 ~~로부터~~ '내가 설득하여 삼 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영재센터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연
락을 받고는 장 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였다~~가 삼 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 은 2015. 8. 경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 으로부터 영재센
터의 사업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고, 2015. 8. 경 주식회사 제 (이하 '제
이라고 한다) 스포츠사업총괄사장인 김 을 만나 'E 관심사다, 이 이
어린이 빙상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요구하
였다.

김 은 삼 내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산하 대
한빙상경기연맹의 회장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겸
직하고 있어,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한 피고인 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삼 그룹이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나 본인의 체육 관련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김 은 곧바로 이 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인 2015. 8. 에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이 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장 는 '김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제안서를 가지고 가 설명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김 은 2015. 8. 경 이 을 만나 영재센터에서 준비한 후원금 제안서를 건네받았고, 이를 제 스포츠전략기획본부장인 이 에게 전네주어 후원금 지급을 검토하게 하였다.

장 는 삼 으로부터 조속히 후원금을 지급받고자, 2015. 9.경 영재센터 회장인 박 에게 '삼 에서 후원을 받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 김 사장과 이 상무를 만나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박 은 그 무렵 김 과 이 을 만나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김 은 삼 계열사인 삼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다.

2015. 9. 하순경 삼 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하자, 김 은 피고인 김 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15. 10. 경 삼 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2016. 3. 경 10억 7,800만원 후원

영재센터가 삼 로부터 5억 5,000만원을 후원받은 직후, 피고인 최 은 삼 으로부터 후원금을 더 지급받고자 장 에게 '스키와 스케이트를 별도로 하여 해외전지훈련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장 는 이 등

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최 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 은 2016. 1. 경 제 대표이사인 임 와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인 김 을 만나 '영재센터는 B. 관심사다, 잘 도와주라고 요구하였고, 김 은 피고인 김 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삼 이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나 본인의 체육 관련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최 은 2016. 1.~2.경 장 에게 삼 에서 지속적으로 후원 을 해준다고 한다, 이 이 삼 관계자를 만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장 는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 에게 '삼 사람들을 만나 후원금을 더 요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 은 2015. 2. 경 제 스포츠전략기획본부장인 이 을 만나 영재센터를 후원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 이를 김 에게 보고하였다.

이 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김 은, 삼 에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후원을 요청하였고, 삼 경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 목으로 10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김 , 피고인 최 은 장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 등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 등 삼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16억 2,800만원 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그

주식회사의 영재센터 후원

한 의 자회사인 그

주식회사(이하 'G' 이라고 한

다)는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김 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한 와 G 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업무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 최 은 이와 같은 피고인 김 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재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6. 1. 경 피고인 김에게 'G' 이 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은 그 무렵 G 대표이사인 이에게 연락하여 'G' 와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이 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G 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마음먹고, G 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G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인 이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최 은 장에게 이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에게 연락하여 G 이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장 은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에게 이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2억 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GI 이 사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6. 1. 경 이 를 통해 이 를 소개받은 이 은 그 무렵 G 사회공헌재단 실무자들을 만나 몇 차례 후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결국 G 사회공헌재단은 2016. 4. 경 5,000만 원, 2016. 6. 경 1억 5,000만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 피고인 최 은 장 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 등 G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김 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G 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최 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대체로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를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지인 박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체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 은 2016. 1. 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체부 산하 한 의 자회사인 G 을 정한 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인 정에게 '대통령께 G 과 더불어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안 은 2016. 1. 대통령으로부터 C 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불어 G 가 있다. G 에 더불어 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 의 대표이사인 이 와 더불어 G 의 대표이사인 조 을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조 의 연락처를 받았다.

안 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경 이에게 전화하여 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 과 협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안 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케 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차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 차관에게 소개시켜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경 문체부 제2차관인 피고인 김 을 조 과 케 사무총장인 정 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김 은 그 자리에서 케 과 더 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 은 2016. 1. 경 조 파티 이사인 고 에게 이 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이에게 G 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는 'G 의 회사규모에 비추어 더 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최 는 2016. 2. 경 피고인 김 에게 'G 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이 해결을 해봐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 은 그 무렵 이 를 만나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무궁무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 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이 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김 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G 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김 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대신에 G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스포츠단과 더 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 은 2016.

2. 경 조 을 만나 '더 가 G 장애인 스포츠단의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였다.

결국 G 은 2016. 5. 경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였고, 2016. 5. 경 더 가 G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G 선수-더 3자간 'G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경 위 계약에 따라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지급 된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더 가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 은 최 안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 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

2007. 1. 경 설립된 체육인재육성재단(이하 '육성재단'이라고 한다)은 체육 분야 인재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소속 재단법인으로, 2016. 1. 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재단원이 통합된 바 있다.

피고인 김 은 2013. 11. 경 육성재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 미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육인재들의 해외연수를 위탁하여 왔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김 은 당시 국내 체류중이던 미국 조 대학 계 교수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육성재단이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을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육성재단으로 하여금 미국 조 대학을 해외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 은 2013. 11. 경 육성재단에 해외연수 위탁기관 재공모를 지시하

였고, 2013. 12.경 제 교수와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그 호텔에
서 육성재단의 해외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김 를 만나 '이번 해외연
수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제 이 교수로 있는 조 대학을 선정하라'고 요
구하였고, 제 교수도 '나의 좋은 친구가 문체부 차관이 되었으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김 는 문체부의 제2차관으로서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 등 육성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김
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위탁기관에 대한 제한공모를 실시하여, 미국 테
대학, 조 대학, 풀 대학으로부터 해외연수 위탁협약을 위한 제안
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조 대학은 연수자들에게 육성재단에서 요구하
는 수준의 영어교육원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어 해외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에게 '해외연수 기관을 조
대학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2014. 3.경 이와 같은 김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김 은 '해외
연수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라, 그렇게 일을 하려면 다 때려 치워라.
재단도 공충분해시키겠다'면서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김 사무총장은 체육인
체육성재단에서 직접 해외연수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한 당초 계획을 포기한 채
문체부에 해외연수 위탁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4. 4.
경 피고인 김 이 지정한 심사위원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조
대학을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 위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은 공무원인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 등 체육인재육성재단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김 은의 공무상비밀누설

문체부는 2016. 1. 충순경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중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신설 예정인 '중앙지원센터'가 지역 체육회 등을 대신하여 스포츠클럽의 설립·운영·평가 등을 총괄하되,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 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김 은 그 무렵 최 으로부터 K- 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 면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종합형스포츠클럽의 터 신설 예정 시기(2016. 4.경)' 등의 내용이 문체부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문체부 자체검토 과정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할 경우 특혜 시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대신에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과 회원모집이 가능한 5개소를 광역거점 K-으로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권한을 위탁할 외부 민간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김 은 2016. 3.경 '5개의 광역거점 K- 을 지정하되, 남양주·고창·강릉 등 3개소의 광역거점 K- 은 공모를 통해 외부 민간법인에게 운영권한을 위탁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3년간 각 클럽당 매년 8억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 체육정책관실 체육진흥과 정 서기관이 기안한 2016. 3. 차 '광역거점 K- 선정 및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체부 내부 보고문건을 최 에게 교부하였다.

사업에 케
은 '종합형스포츠클럽 전
구체적 현황, 중앙지원센
터 내부 보고문건을 최.

그런데,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사업 계획은 국가 중요 체육 정책의 일안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문체부 제2차관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없고, 사업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유출될 경우 공모의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비공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 은 문체부 제2차관의 직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영방안' 등 2종의 문건을 ~~교부함으로써~~에게 교부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III.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통
2. 구속영장 1통
3. 변호인선임서 2통
4.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통, 풀

